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방향(금융위원회)

◇ 정산자금이 **안전하게 보호**될 수 있도록 하고 PG사의 **건전경영을**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·감독장치 마련

1.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

- ① (별도관리 의무)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·판매자 보호를 위해 미정산자금 전액(100%*)에 대한 별도관리(예치·신탁·지급보증) 의무 부과 * EU, 영국, 중국 등 해외사례(100% 별도관리) 및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고려
 - 신탁·지급보증시 **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**하며, 정산자금 보호 조치내용을 **파매자에게 고지**하고 **회사 홈페이지**에 공시
 -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, 적절한 경과기간 부여*
 * 예시 : (시행 후 1년) 60% → (2년) 80% → (3년) 100%
- ② (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) 정산자금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·담보제공, 제3자의 압류·상계를 금지
 - PG사의 **파산시**에도 이용자·판매자의 **정산대금이 안전하게** 보호될 수 있도록 **우선변제권 도입**

2.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사) 관리·감독 강화

- ① (진입규제 강화)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* * (현행)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3억원 / 30억원 초과 10억원
- ② (감독 실효성 확보)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 未준수시, ¹ 시정요구 → ²(미이행시) 영업정지→ ³(미이행시)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^{*} * 현재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
- ③ (자금유용, 대금 미지급시 제재·처벌)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 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·처벌근거 마련

☞ **정부안 발표** 후 **9월중 공청회** 등 의견수렴을 거쳐 **국회 제출** 추진

- □ PG업의 본질은 계속적·반복적으로 他人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임
 - 그런데 현행 법상 **PG업 정의***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,
 - *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정의 :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
 -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
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
- □ 자기사업을 위한 **내부정산까지 PG에 포함**할 경우
 - e커머스, 백화점, 프랜차이즈, 여객터미널, 화물차 지입업자, 인력 공급업자, 건설시공사, 고속도로 휴게소(키오스크) 등 경제활동 과정 에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 발생
 -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*가 강제될 경우 과잉
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 발생
 - * 경영건전성규제(자기자본, 유동성비율 준수 등), 보안규제(망분리, 데이터 백업,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등) 준수 필요